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 매입 협조 청원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8
----------	----

2022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원자 : 민중규 외 5,944명
- 나. 소개의원 :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다. 접수일 : 2022년 1월 6일
- 라. 회부일 : 2022년 1월 17일
- 마. 상정일 : 제3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2월 11일 상정·의결(채택)

2. 청원요지

-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는 시립대 및 망우로 인접 상가, 아파트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도로 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이 곳에 위치한 국유지(용도폐지된 파출소 부지)는 한국자산공사(캠코)에서 공매처분할 계획으로, 당초 해당 부지를 국가에 증여한 (재)제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 도로를 조성한 후 서울시(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할 계획인바, 공매처분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본 재단에서 매입할 수 있게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원 요지

- 청원인 외 5,944명은 삼육서울병원 입구에 위치한 공매대상 국유지에 대하여 이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동대문구)하는 공익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에서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임.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는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본 청원의 채택이 필요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청원인이 매입 협조 요청한 토지는 휘경파출소로 활용하다 용도폐지되어 2021년 7월에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되어 현재 활용부서 소요조회 중에 있음(2021년 10월~).
- 기획재정부로 관리전환 된 국유지의 활용 및 처분 등은 국유재산 위탁관리 총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소관 법인 「국유재산법」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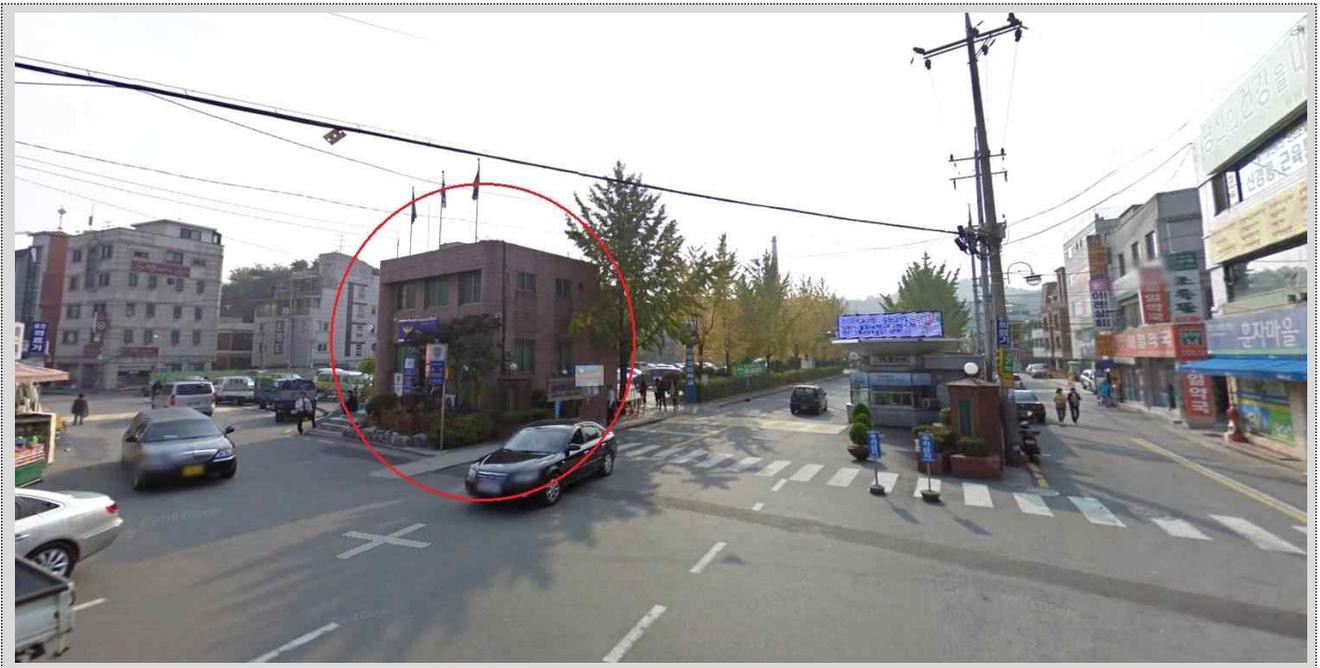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태한)

- 본 청원은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에 위치한 국유지*(이하 “청원부지”)를 공익적 목적(도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하 “재단”)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3-8 대지 93㎡, 소유자: 국가(기획재정부), 경찰청 (휘경파출소)에서 사용 후 2021.7.28. 용도폐지, 현재 활용부서 소요조회 중(등기 사항증명서 참조).

< 청원부지 현황 >



※ 청원인은 지역 치안문제 해소를 위한 파출소 설치를 목적으로 청원인 중 재단이 청원부지를 국가에 증여(1979. 11.29.)했던 부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 청원인은 교통체증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삼육서울병원 입구에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는 청원부지를 재단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조성하고 종국적으로 서울시(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 청원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본 수익계약 매입 추진 협조 청원은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으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법적 사항 검토

- 「지방자치법」(제86조)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원법」(제5조)에서는 국민은 청원기관(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59조)에서 이외의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8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제11조제3항에 따른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

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에서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제4조), 청원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9조).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한편, 「국유재산법」(제43조)에서는 일반재산의 처분은 공고를 통한 일반 경쟁으로 하되, 필요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으로 28개의 호를 열거(조문 별첨)하면서,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나,
 - 제17호의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생략)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5. ~ 16. (생략)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이하 생략)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전문 별첨>

다. 검토의견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유지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국유재산법」 제43조 참조),
 - 국유지에 대한 처분 방식의 결정이 청원기관(서울특별시)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재무국 의견 참조)고 할 것이며(「청원법」 제5조제5호 참조),
 - 청원부지는 서울시유지 간선대로 및 구유지 도로로부터 청원 재단 소유의 대규모 시설(삼육서울병원, 삼육보건대학교 등) 진입 초입에 3면이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는 도로접합 대지로써 재단(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청원법」 제6조제5호 및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제4조제5호 참조).

< 청원 부지 및 주변 현황 >



※ 우하단 불투명 구역(삼육서울병원, 삼육보건대학교 등)은 청구 재단인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유임.

○ 따라서 청원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 받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에 따른 취득 방안이라고 할 것으로,

- 명확한 근거 없이 재단에서 청원부지를 예외적인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입(협조)을 구하고 있는 본 청원은, 공익 목적 사용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바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유재산법·령, 지방자치법·령,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등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청원부지는 3면이 청원인 재단 소유 부동산에 맞닿아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써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재단에서 직접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 청원 재단이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동대문구 또는 필요시 서울시가 공공용재산(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청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청원 재단이 본 청원부지 취득 및 도로조성 자금을 동대문구에 기부하여, 동대문구에서 공공용재산으로 수의계약 취득하고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별첨 1]

의견서

□ 청원명 :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 매입 협조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재무국)

□ 채택 의견

-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는 시립대 및 망우로 인접 상가, 아파트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도로 확충이 필요한 상태임.
이 곳에 위치한 공매처분 대상 국유지를 재단법인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 도로로 조성하여 동대문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니, 공매처분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본 재단에서 매입할 수 있게 서울시가 협조해 줄 것을 청원함.
- 다만, 이는 대상 부지를 예외적인 수의계약 방법으로 청원 재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국유지 처분 과정에 권한 없는 서울시의 개입을 구하는 청원으로, 공익목적 사용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 한편, 대상 부지는 3면이 청원인 재단 소유 부동산에 맞닿아 둘러싸여 있는 형태인바, 재단에서 직접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7호),
- 나아가, 청원 재단이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동대문구 또는 필요시 서울시에서 공공용재산으로 수의계약 취득하여 청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4호).
-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48	접수연월일	2022. 1. 6.
청원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성명	민중규 외 5,944명	
소개의원	오중석	소속위원회	도시계획관리
건명	동대문구 휘경동 283-8번지 국유토지매입 협조 청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		
<p>○ 동대문구 휘경2동 삼육서울병원 입구는 시립대 및 망우로 인접 상가, 아파트 진출입 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도로 확충이 필요함.</p> <p>따라서, 휘경파출소 이전으로 용도폐지된 파출소부지를 도로로 활용하면 교통체증 일부라도 해소될 것이고, 파출소 신축을 위해 토지를 증여했던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에서 토지를 재매입하여 공익목적 도로로 용도변경하여 서울시(동대문구)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함.</p> <p>이에, 한국자산공사(캠코)에서 공매로 처분할 경우 속칭 “알박기”가 우려되어 공익목적 사용이 불가하므로,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임.</p>			